

#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규정

제정 2024. 3. 25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 1조 (목적)

본 규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 3조 (권 한)

-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-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542조의 6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
## 제 2 장 구 성

### 제 4조 (구 성)

-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 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
### 제 5조 (위원장)

-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 3 장 회 의

### 제 6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③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 7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회의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 제 8조 (결의방법)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
### 제 9조 (부의사항)

-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  2.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# 제 10조 (사외이사 후보의 추천)

-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.
  1.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외이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
  2. 과거 기업가치를 훼손했거나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
  3.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

### 제 11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 제 12조 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그 다음날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제 13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# 제 14조 (규정의 개정)

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## 부 칙

1. 본 규정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